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학교 운영 사항에 교원보호·학교폭력 등 추가〉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제학교 운영 사항에 교원보호·학교폭력 등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국제학교 운영 사항에 교원보호·학교폭력 등 추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함) 내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

현행	개정안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7. <u>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u>

④ ~ ⑦ (생략)	<u>사항</u>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내의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²⁾, 이에 따라 현재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4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임.

「제주도법」이 동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

1) 「제주도법 시행령」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제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도법」

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³⁾, 제주자치도 내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고 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⁴⁾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⁵⁾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⁶⁾의 적용도 배제되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제학교의 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3) 「제주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초·중등교육법」

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주도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자치도교육청에 의하면, 현재 제주자치도 내 국제학교는 내부규정을 통해 ‘국제학력기준’⁷⁾에 부합한 학생의 안전과 보호, 교원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에 제주자치도 내 국제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⁸⁾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해당 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국제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7) 제주자치도교육청에 의하면, 제주자치도 내 국제학교는 COBIS(영국국제학교협의회), CIS(국제학교위원회), WASC(미서부 국제학교 인증기관) 등 국제학력기구에서 학생 안전·보호 규정을 인증받고 있음.

8)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9, 전체회의 미상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법」 제228조제3항 각호는 수업,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등 국제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보호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제22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제학교 내부 규정을 통해 학교폭력 등을 조치하고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규정 등이 특별법에 의해 적용이 된다면 국제학교의 자율운영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참고

제주자치도 내 국제학교 별 생활규정 및 인증기준

□ 생활규정

학교명	규정 명칭	비고
NLCS Jeju	- Anti-Bullying Policy - Student code of conduct and Rules of the school -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olicy -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	CIS 인증 2017.12. COBIS 인증 2023.3.
BHA	- Anti-Bullying Response Procedures - School Code of Conduct	CIS 인증 2018.4., WASC 인증 2023.6.
SJA Jeju	- Conflict Resolution Flow Chart	NEASC인증 2021.5.
KIS	- School and Dorm Life Guide	WASC 인증 2021.6.인증 (2027.6 까지)

※ 자료 : 제주자치도교육청

□ 인증기준

- * CIS(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국제학교위원회):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기준 등 인증
- * COBIS(Council of British International Schools, 영국국제학교협의회)
-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미국식 국제학교 인증기관(서부)
- *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미국식 국제학교 인증기관(동부)

※ 자료 : 제주자치도교육청